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35
----------	-----

2019년 6월 19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3. 상정일자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9년 6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학부모교육 지원의
근거 마련으로 학부모교육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조례 제명 변경

나.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학부모교육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신설)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735호로 제출되어 2019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학부모 지원 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등 학부모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 교육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교육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교육청의 학부모교육 지원정책을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은 학부모회 임원 직무연수, 학부모대학 운영, 서울형 혁신학교 학부모 연수를 비롯한 각종 학부모 연수 등 다양한 학부모 대상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¹⁾

1) 학부모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학부모교육을 위해 「학부모자녀교육자료가이드북」(2014)이나 「밥상머리교육 학부모용길라잡이」(2015) 등의 교육용 자료들을 작성하여 제공한바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학부모ON누리(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를 운영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부모교육 사업은 매년 신설·변경·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고 학부모지원센터도 조례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²⁾

[표1] 학부모 대상 교육 현황(본청 기준)

부서명	교육명(연수명)	2019년 추진계획
참여협력담당관	학부모회 임원 직무연수	학부모회 임원 대상 2회, 2,000명 운영 예정
	전환기 학부모교육	282개 유·초·중학교, 5개 학부모교육원, 10개 교육지원청, 30,000명 대상
	학부모대학	학부모 대상 5개 과정, 300명 및 캠퍼스 100개 과정 운영 예정
교육혁신과	서울형혁신학교 학부모(대표) 연수(워크숍)	초·중등 학부모 대상 3회, 400명 대상 운영 예정
	혁신미래교육 학부모리더십 연수	2회, 초·중등 학부모 200명 대상 운영 예정
	GED 교사관찰추천 학부모 연수	초중 학부모 300명 대상 운영 예정
	학교로 찾아가는 정보통신윤리 학부모연수	초중고 154교 운영예정
	고입전형 및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이해	11개 교육지원청, 11회, 2,200명(예정)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부모 연수	11개 교육지원청, 24회, 3,000명(예정)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오늘과 만나는 학부모 인문고전 아카데미	초중고 학부모 3개과정 2회 500명
	다문화 학부모교육	4회, 400명 운영 예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연수	본청 및 11개교육지원청 24회, 4,000명 운영 예정
중등교육과	선행교육 근절 관련 교원 및 학부모 연수	교육부 사업 일몰 및 교육정책사업정비에 의해 단위학교별로 운영 예정
학교지원과	후기고등학교 진학 설명회	11개 교육지원청, 20회, 5,000명 운영 예정
진로직업교육과	학부모 진로교육지원단 양성연수	초중고 학부모 대상 기본, 심화과정 운영 예정
체육건강 문화예술과	학교급식 학부모 연수	초중고 학부모 대상 5회, 1,000명 예정
	식품알레르기 학부모 연수	초중고 학부모 대상 2회, 1,000명 예정
	학부모 모니터요원 교육	초중고특수 학부모 모니터요원 대상, 2,600명
	운동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운동부 학부모 연수	본청 소속 학교운동부 학부모 270명

○ 이러한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이 학부모교육의 제도화를 통해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건전한 교육관 정립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2017년에 시행한 ‘학부모와 함께 하는 세계시민교육 나눔 특강·연수’ 사업이 2018년부터 폐지되었고, ‘다문화 학부모교육’은 2017년에 시행하였다가 2018년에 폐지되고 다시 2019년에 시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 학부모회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에 학부모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교육감이 학부모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개정조례안은 제명에서 학부모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제6호를 신설하여 학부모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 학부모교육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서 2010년부터 제도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온 ‘서울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교육위원회가 제도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센터들의 난립문제에 대한 지적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22조에서는 학부모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표2]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현황

구분	내 용
설치	- 2010년도 교육부 계획 의거 교육부 특별교부금(2010.4.)으로 설치·운영
위치	- 창덕여자중학교 내 별도 건물 중 1층 (*독서교육지원센터와 공동 사용)
시설	- 사무실(21.6㎡, 업무공간) - 상담실: 개인상담실(30.6㎡, 2실), 집단상담실(45.9㎡)
인력	- 학부모상담사 2명 근무(무기계약직)
예산	- 금113,499천원 (자체 81,999천원 + 특교 31,500천원) - (자체) 학부모상담사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사무용품비 - (특교) 센터홍보 자료 제작, 찾아가는 집단상담,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위탁사업비
역할	- 현재 학부모 상담(개인상담, 집단상담 등)을 중점 운영 * 최근 3년간 센터 이용 현황 8,512명(2016) ⇒ 8,798명(2017) ⇒ 10,438명(2018)

- 전반적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학부모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학부모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의 종류 명시,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에 비추어 조례 개정 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 제19조, 제20조,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교육활동 지원 계획 수립) 교육감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육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활동 지원 사업) 교육감은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부모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 사업
2.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사업
3. 자녀교육 등을 위한 상담 사업
4. 그 밖에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21조(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교육감은 제2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중전의 제19조)제1항 중 “운영” 을 “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 추진”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u>학부모회</u>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신설></p> <p>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① <u>서울특별시교육감</u>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생략)</p> <p><신설></p> <p><신설></p>	<p>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u>학부모회</u>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학부모교육”</u>이란 학부모의 <u>역할 수행과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u></p> <p>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① <u>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u>교육활동 지원 계획 수립</u>) <u>교육감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육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제20조(<u>교육활동 지원 사업</u>) <u>교육감은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p>

<신 설>

제19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 (생략)

1. 학부모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 사업
2.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사업
3. 자녀교육 등을 위한 상담 사업
4. 그 밖에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21조(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교육감은 제2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재정지원 등) ① -----
----- 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 추진---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 (현행 제20조와 같음)